

# 강서 그랜드 I'PARK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현대산업개발  정도건설주식회사

분양문의 **1588-4015**

# I'PARK

아이파크의 자부심을 더해 강서의 미래가치가 높아집니다

# 강서 그랜드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A블록(1095번지)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5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18층 2개동 총 120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의거 주택공급 세대수의 3%인 3세대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3자녀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함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단위 : 면적-㎡, 금액-천원, VAT포함)

구 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해당동 (A블록)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층수	공급금액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가격	건물가격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민영주택	2008000313	21847-01	139.400 <sup>㉒</sup> 42평형	101	15	112,460	26,940	139,400	74,709	214,109	19,341	4~18층	204,775	656,069	860,844
		21847-02	144.073 <sup>㉒</sup> 43평형	102	15	116,230	27,843	144,073	77,214	221,287	19,990	4~18층	211,640	678,062	889,702
		21847-03	152.043 <sup>㉒</sup> 45평형	102	15	122,660	29,383	152,043	81,485	233,528	21,095	4~18층	223,348	715,571	938,919
		21847-04	153.060 <sup>㉒</sup> 46평형	101	15	123,480	29,580	153,060	82,030	235,090	21,236	4~18층	224,841	745,824	970,665
		21847-05	168.691 <sup>㉒</sup> 51평형	101	15	136,090	32,601	168,691	90,406	259,097	23,405	4~18층	247,802	850,056	1,097,858
		21847-06	172.124 <sup>㉒</sup> 52평형	101	15	138,860	33,264	172,124	92,247	264,371	23,882	4~18층	252,846	895,992	1,148,838
		21847-07	185.090 <sup>㉒</sup> 55평형	102	15	149,320	35,770	185,090	99,195	284,285	25,680	4~18층	271,892	994,281	1,266,173
		21847-08	224.569 <sup>㉒</sup> 67평형	102	15	181,170	43,399	224,569	120,355	344,924	31,158	4~18층	329,887	1,243,719	1,573,606

평형 환산방법	139.400㎡	144.073㎡	152.043㎡	153.060㎡	168.691㎡	172.124㎡	185.090㎡	224.569㎡
㎡ × 0.3025 또는 ㎡ ÷ 3.3058	<sup>㉒</sup> 42평형	<sup>㉒</sup> 43평형	<sup>㉒</sup> 45평형	<sup>㉒</sup> 46평형	<sup>㉒</sup> 51평형	<sup>㉒</sup> 52평형	<sup>㉒</sup> 55평형	<sup>㉒</sup> 67평형

## ■ 분양대금 납입일정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잔 금
납입일자	계약시	2008. 5. 13	2008. 10. 13	2009. 3. 13	2009. 8. 13	2010. 1. 13	입주지정일
납입비율	10%	10%	10%	10%	10%	10%	40%

## ■ 발코니확장 공사비

주택형(㎡)	㎡당 단가	확장면적(㎡)	공급가액	비 고
139.400 <sup>㉒</sup> 42평형	39,4305	18.26	7,920,000	각 주택형별 일부만 확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모델하우스 내 주택형별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괄 확장공사 조건으로만 계약을 체결함.
144.073 <sup>㉒</sup> 43평형	25,5024	25.88	7,260,000	
152.043 <sup>㉒</sup> 45평형	46,0177	20.34	10,296,000	
153.060 <sup>㉒</sup> 46평형	34,0676	20.43	7,656,000	
168.691 <sup>㉒</sup> 51평형	19,3759	36.85	7,854,000	
172.124 <sup>㉒</sup> 52평형	64,0385	20.80	14,652,000	
185.090 <sup>㉒</sup> 55평형	37,6229	21.37	8,844,000	
224.569 <sup>㉒</sup> 67평형	39,5109	31.89	13,860,000	

**B블록**(1095- 4번지)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5-4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17층 1개동 총 39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의거 주택공급 세대수의 3%인 1세대(146.58㎡)를 서울특별시 거주 3자녀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함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단위 : 면적-㎡, 금액-천원, VAT포함)

구 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해당동 (B블록)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층수	공급금액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가격	건물가격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민영 주택	2008000318	21853-01	146.587 <sup>㉔</sup> 44평형	103	13	117,970	28,617	146,587	100,297	246,884	26,411	5~1층	279,624	619,173	898,797
		21853-02	157.373 <sup>㉔</sup> 47평형	103	13	126,650	30,723	157,373	107,676	265,049	28,354	5~1층	300,198	690,917	991,115
		21853-03	161.747 <sup>㉔</sup> 48평형	103	13	130,170	31,577	161,747	110,669	272,416	29,142	5~1층	308,542	710,119	1,018,661

평형 환산방법	146.587㎡	157.373㎡	161.747㎡
㎡× 0.3025 또는 ㎡÷ 3.3058	<sup>㉔</sup> 44평형	<sup>㉔</sup> 47평형	<sup>㉔</sup> 48평형

■ **분양대금 납입일정**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잔 금
납입일자	계약시	2008. 5. 13	2008. 10. 13	2009. 3. 13	2009. 8. 13	2010. 1. 13	입주시정일
납입비율	10%	10%	10%	10%	10%	10%	40%

■ **발코니확장 공사비**

(단위 : 면적-㎡, 금액-원, VAT포함)

주택형(㎡)	㎡당 단가	확장면적(㎡)	공급가격	비 고
146.587 <sup>㉔</sup> 44평형	240,385	37.44	9,900,000	각 주택형별 일부만 확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모델하우스 내 주택형별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괄 확장공사 조건으로만 계약을 체결함.
157.373 <sup>㉔</sup> 47평형	247,378	27.65	7,524,000	
161.747 <sup>㉔</sup> 48평형	278,997	37.85	11,616,000	

■ **청약시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부지(도로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단, 대출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작력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부시 연체료가 부과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에별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10년 6월중**(정확한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함)

-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 신청자격 유의사항

### 1.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 하면서 만20세미만의 직계 자녀3명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A블록(1096번지)은 공급 주택의 3%범위(3세대), B블록(1095-4번지)은 1세대를 각각특별 공급함
- A블록(1096번지)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세대(152,043㎡), 경기도 거주자에게 1세대(144,073㎡),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세대(139,400㎡)를 각각공급함 ○ B블록(1095-4번지)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세대(146,587㎡)를 특별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신청점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공급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구비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③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④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 ⑥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⑦ 신분증 및 인감도장.
  - ⑧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 변동내역 표시 분).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10	3자녀	35		
			2명 이상	10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 미만	15		
			1년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건보료 등 주택소유전산색소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2. 일반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3.20)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 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재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 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 무주택 우선공급 주택당첨자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 신청본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당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외 제한 받을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 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전주택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물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08.3.24 (월요일)	당사건본주택 10:0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8.4(21:40)</li> <li>• 장소 : 당사건본주택</li> </ul>
	1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li>●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li> <li>- 2002년9월5일 이후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분(※2002년9월5일 가입자 포함)</li> </ul> </li> </ul>		08.3.25 (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① 금융결제원 : www.qx2you.com</li> <li>② 국민은행 : www.kbsr.com</li> <li>- 예외 : 청약통장가입 은행 본·지점</li> </ul> </li> <li>● 접수시간 : 인터넷 8:30~18:00 본·지점 9:30~16: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짜 : 08.4(2(수요일)</li> <li>• 장소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www.kait.com www.i-park.com</li> <li>• 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결제원 (1369-15#)</li> <li>② 국민은행 (1388-9999 → 70)</li> </ul> </li> <li>• 당첨자 명단은 상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화내용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li> <li>●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가 1순위 청약이 불가한 분</li> </ul>		08.3.26 (수요일)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08.3.27 (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 : 하나은행 본·지점</li> <li>● 접수시간 : 9:30~16:30</li> </ul>	

※ 모든 청약자격은 은행에서 확인(또는 검증)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성검구 접수시간 - 9:30~16:30)

## ■ 신청접수 방법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청약과열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정부시책에 따라 06.12.1부터 의무 시행하는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함.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
- 층별, 동별, 호별 라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정한 날짜에 접수하여,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추첨에서 제외될수 있음.

##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구 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본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크공인인증서발급], 폰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li> <li>● 3순위 : 하나은행 본·지점(창구방문 필수)</li> </ul>	
	KB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Fi폰 기종만 가능)</li> </ul>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12you.com)에 접속</li> </ul>
	KB모바일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li> <li>●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li> </ul>	

## ■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하여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월일, 기여지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횡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전용면적변경한 자 신청요건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은행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영주택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는 하나은행 본·지점에 비치)</li> <li>● 청약예금 통장 (제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 (제1·2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li> <li>● 청약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증 사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li> <li>※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초본, 의료보험증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 </ul>
	제3차 대리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 장소비치)</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록증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신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내에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지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평 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전주택형	5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한1매로 준비바람).

##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2008. 4. 3(목) ~ 4. 4(금) 2일간 10:00 ~ 16:30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하나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 으로 신청한 자가환불시에 한함.
- 제3차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청약자 인감도장(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차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분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하되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음</li> <li>●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li> </ul>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 신청 분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 당첨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건분주택 등에 별도 공고함.</li> </ul>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당첨자) : 2008년 4월 10(일)목, 11(일)금, 14(일)월 - 3일간 10:00 ~ 16:30
- 계약체결 및 계약금납부 장소 : 당사 건분주택(전환)내 합좌에서 계약체결을 하며, 계약금은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자가 직접 입금 시키야 합니다.
- 계약당일에 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유지함.
-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동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나은행	150-910028-70704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바람.

- 지정된 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위 하나은행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분양금은 상기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료상 상실됨.

## ■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 분	계약시 구비사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li> <li>●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li> <li>● 인감도장</li> <li>● 주민등록등본 1통</li> <li>● 주민등록증</li> <li>●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li> <li>-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1통)</li> <li>-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li> <li>-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li> </ul> </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 및 자격에 대한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ul>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통(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li> <li>-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li> </ul> </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란은 공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인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서 구비사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조건

-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2002.9.5 이후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약 재사용이 불가함.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행정구역 및 단지에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를 준수함.

## ■ 인터넷·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제외한 티은행외의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자점 → 당첨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당첨사실조회</li> </ul>
	이용기간	2008. 4. 2 ~ 2008. 4. 11 (10일간)	
전 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 1588 - 9999 (서비스번호 : 70)	☎ 1369 (서비스번호 : 5#)
	이용기간	2008. 4. 2 ~ 2008. 4. 11 (10일간)	
KB 모바일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li> <li>●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li> </ul>	
	이용기간	2008. 4. 2 ~ 2008. 4. 11 (10일간)	

## ■ 청약 가점제 적용안내

-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50%, 추첨방식 50%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6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 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점제 활용"을 활용하시기 바람.

###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자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인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 1) 가점제 점수는 다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다목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2) 다목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다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② 부양가족수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3명	20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계	84				

\* 비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제5항,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정세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구분	감점항목		감점점수	판단방법
	기준	소유주택수		
①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 세대원 중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에 : 2주택 소유시에 5점감점) * 세대원인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저축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 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에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해당 없으며(0점입),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3호 또는 3세대	-15	
		:	: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가점제 점수 계산시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①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무주택 간주세대의 경우에 관련증빙서류, 주택공시가격,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 상 등기접수일(미 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공유자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됨.
5. 공유자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기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규칙(별표 제4호 기목2))

- ① 「전문연구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총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 ②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③ (현재 : 무주택자) 종전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기타유의사항

- ①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 전체의 공동 시설임.
- ②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주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의 사망, 세대주의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된 경우)



-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재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자 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단차대 명칭 또는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과 관련된 일체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처리됨.
- 이 아파트는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집계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발코니 확장부위에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유리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 예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옥탑경관조형 및 측면 로고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상하기로 한다.
-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따라 당 사업부지 A블록(1095번지)은 남측, B블록(1095-4번지)은 북측에 공공에 제공되는 부분 (보도·차도홍용공간)이 설치되며, 이는 공공에 제공되어 사용하는 부분임
- 당 사업부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연결통로구간은 A블록(1095번지)과 B블록(1095-4번지)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임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건보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건보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팜플렛 등 각종 인쇄홍보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보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건설교통부 주관30415-26906(90, 10, 15)계] 의거 임의로 철거하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건보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계약체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대출규정(DTI적용 등) 및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 입주예정자에 대한 용자안내

- 용자금액 : 계약금 1차 10% 납입 후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 단, 개인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개인의 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약정된 분양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입주시점에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용자기관의 담보평가에 따라 용자금액이 축소 또는 증가할 수 있음)

## ■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예정일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 4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지는 추후 통보함)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기공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 부대복리시설

- A블록(1095번지) :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 B블록(1095-4번지) : 주민공동시설

# 동·호 배치도

## 총159세대 (아파트 지상4층이상)

A블록	139㎡ 15세대	144㎡ 15세대	152㎡ 15세대	153㎡ 15세대
	168㎡ 15세대	172㎡ 15세대	185㎡ 15세대	224㎡ 15세대
B블록	146㎡ 13세대	157㎡ 13세대	161㎡ 13세대	

▼ 101동 A블록 1095번지

166.691㎡ *15평형	139.400㎡ *12평형	172.124㎡ *12평형	153.060㎡ *16평형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업무시설(3층)			
근린생활시설 (1~2층)			

▼ 102동 A블록 1095번지

152.043㎡ *15평형	155.090㎡ *15평형	224.599㎡ *16평형	144.073㎡ *13평형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업무시설(3층)			
근린생활시설 (1~2층)			

▼ 103동 B블록 1095-4번지

146.587㎡ *14평형	16.747㎡ *18평형	157.373㎡ *17평형
1701	1702	1703
1601	1602	1603
1501	1502	1503
1401	1402	1403
1301	1302	1303
1201	1202	1203
1101	1102	1103
1001	1002	1003
901	902	903
801	802	803
701	702	703
601	602	603
501	502	503
주민공동시설(4층)		
근린생활시설 (1~3층)		



※ 본 지면 상의 조감도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외관, 시설물의 배치 구획, 주변경관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지면 상의 투시도, 사진 이미지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시설물의 위치, 디자인 구조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A블록**

139.400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12.46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 26.940m<sup>2</sup>
- 분 양 면 적 : 139.400m<sup>2</sup>
- 기 타 공 용 : 74.709m<sup>2</sup>
- 계 약 면 적 : 214.109m<sup>2</sup>

139.400m<sup>2</sup>는 과거 42평형입니다

가족의 미소와 꿈을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A블록**

144.073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16.23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 27.843m<sup>2</sup>
- 분 양 면 적 : 144.073m<sup>2</sup>
- 기 타 공 용 : 77.214m<sup>2</sup>
- 계 약 면 적 : 221.287m<sup>2</sup>

144.073m<sup>2</sup>는 과거 43평형입니다

햇살의 혜택이 기분 좋은 밝고 활기찬 공간입니다



※ 본 지면 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면적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옵션 품목에 대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입니다



**A블록**

152.043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22.660m <sup>2</sup>
■ 주거공용면적 :	29.383m <sup>2</sup>
■ 분 양 면 적 :	152.043m <sup>2</sup>
■ 기 타 공 용 :	81.485m <sup>2</sup>
■ 계 약 면 적 :	233.528m <sup>2</sup>

152.043m<sup>2</sup>는 과거 45평형입니다

살수록 즐거움이 더하는 창조적인 공간입니다



**A블록**

153.060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23.480m <sup>2</sup>
■ 주거공용면적 :	29.580m <sup>2</sup>
■ 분 양 면 적 :	153.060m <sup>2</sup>
■ 기 타 공 용 :	82.030m <sup>2</sup>
■ 계 약 면 적 :	235.090m <sup>2</sup>

153.060m<sup>2</sup>는 과거 46평형입니다

**A블록**

168.691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36.09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 32.601m<sup>2</sup>
- 분 양 면 적 : 168.691m<sup>2</sup>
- 기 타 공 용 : 90.406m<sup>2</sup>
- 계 약 면 적 : 259.097m<sup>2</sup>

168.691m<sup>2</sup>는 과거 51평형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공간의 깊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A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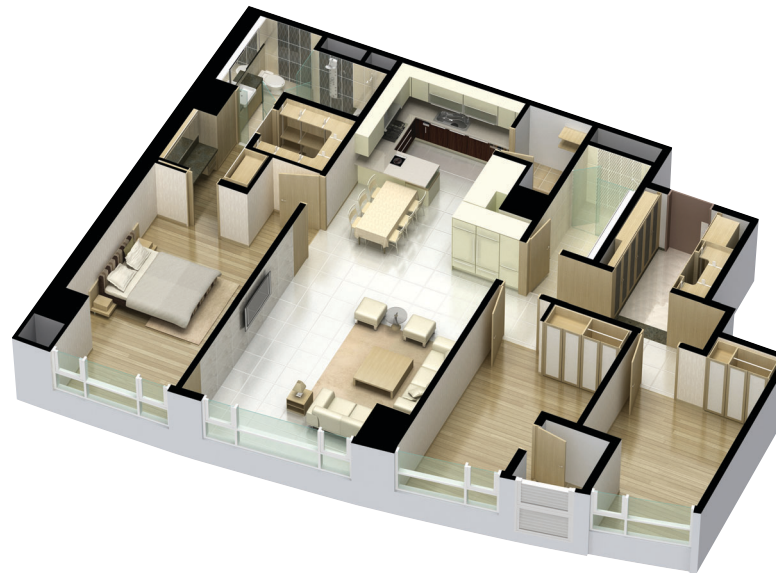
172.124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38.860 m<sup>2</sup>
- 주거공용면적 : 33.264m<sup>2</sup>
- 분 양 면 적 : 172.124m<sup>2</sup>
- 기 타 공 용 : 92.247m<sup>2</sup>
- 계 약 면 적 : 264.371m<sup>2</sup>

172.124m<sup>2</sup>는 과거 52평형입니다

높은 기품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세상을 앞서가는 정상의 설계철학이 돋보입니다



A블록

185.090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49.320m <sup>2</sup>
■ 주거공용면적 :	35.770m <sup>2</sup>
■ 분 양 면 적 :	185.090m <sup>2</sup>
■ 기 타 공 용 :	99.195m <sup>2</sup>
■ 계 약 면 적 :	284.285m <sup>2</sup>

185.090m<sup>2</sup>는 과거 55평형입니다

그대의 삶을 멋스러움과 중후함이 묻어나게 합니다



A블록

224.569 m<sup>2</sup>

15세대

■ 전 용 면 적 :	181.170m <sup>2</sup>
■ 주거공용면적 :	43.399m <sup>2</sup>
■ 분 양 면 적 :	224.569m <sup>2</sup>
■ 기 타 공 용 :	120.355m <sup>2</sup>
■ 계 약 면 적 :	344.924m <sup>2</sup>

224.569m<sup>2</sup>는 과거 67평형입니다

**B블록**

146.587 m<sup>2</sup>

13세대

- 전 용 면 적 : 117.97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 28.617m<sup>2</sup>
- 분 양 면 적 : 146.587m<sup>2</sup>
- 기 타 공 용 : 100.297m<sup>2</sup>
- 계 약 면 적 : 246.884m<sup>2</sup>

146.587m<sup>2</sup>는 과거 44평형입니다

낭만이 묻어나는 생활의 여유를 누립니다



**B블록**

157.373 m<sup>2</sup>

13세대

- 전 용 면 적 : 126.65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 30.723m<sup>2</sup>
- 분 양 면 적 : 157.373m<sup>2</sup>
- 기 타 공 용 : 107.676m<sup>2</sup>
- 계 약 면 적 : 265.049m<sup>2</sup>

157.373m<sup>2</sup>는 과거 47평형입니다

예술로 빚어낸 공간에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 본 지면 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면적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옵션 품목에 대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공간감과 시원한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B블록

161.747 m<sup>2</sup>

13세대

■ 전 용 면 적 :	130.170m <sup>2</sup>
■ 주거공용면적 :	31.577m <sup>2</sup>
■ 분 양 면 적 :	161.747m <sup>2</sup>
■ 기 타 공 용 :	110.669m <sup>2</sup>
■ 계 약 면 적 :	272.416m <sup>2</sup>

161.747m<sup>2</sup>는 과거 48평형입니다